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8. 11 선고 2021가단7244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진, 담당변호사 함영주

변 론 종 결 2021. 7. 7.

판 결 선 고 2021. 8. 11.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20. 6. 29.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D에게 이 법원 광양등기소 2020. 11. 6. 접수 제306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주식회사 E는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119651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7. 22. “D는 주식회사 E에게 10,584,234원 및 그 중 8,595,740원에 대하여 2015.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이하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원고는 2018. 7. 5. E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고, 2020. 11. 25. E로부터 채권양도양수통지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받아 D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그 무렵 D에게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하였다.

나. 피고와 D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

D의 아버지 F는 2020. 6. 29.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D, G, H, I, J, K, L가 F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피고 상속지분: 3/17 지분, D, G, H, I, J, K, L 상속지분: 각 2/17 지분). F의 상속인들은 2020. 6. 29.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분할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분할약정에 따라 피고는 2020. 11.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의 재산상태

이 사건 분할약정 당시 D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과 수익자의 악의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D는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부담하는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분할약정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2/7 지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하였는데, 위와 같은 이 사건 분할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를 비롯한 D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D는 이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는 이 사건 분할약정이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나.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분할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17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광양등기소 2020. 11. 6. 접수 제306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아들인 D가 2003. 2. 22. 분가하여 생활하다가 2015. 1. 31.경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해외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알지 못하였고, 피고가 남편인 F와 함께

살던 이 사건 부동산에서 F의 사망 후 여생을 편히 지낼 목적으로 D를 포함한 F의 공동상속인들과 이 사건 분할약정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을 2, 4, 5호증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이 사건 분할약정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유재현

부동산 목록

1. 광양시 M 대 433㎡
2. 광양시 N(O) 적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주택 99.75㎡, 끝.

